

**중개대상물 표시·광고시,
관리비 세부내역을
표시하여야 합니다!**

※ 관리비 표시·광고 위반으로
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



표시·광고 기준 개정*을 통해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세부비목(공용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 등) 및 금액을 입력·표시토록 의무화('23.9.21 시행) 되었습니다.

*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명시사항 세부기준 제6조제11호 개정

개정 전

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, 그 외 비목 포함시 그 내용 표시
(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)

(예시) 관리비 15만원, 전기료, 수도료 포함

개정 후

가. 정액관리비 10만원 이상 : 비목별 금액 표시

* 비목: 일반(공용)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사용료, 난방비 등

** 단,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비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목별 금액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

(예시) 정액관리비 15만원 (일반관리비 8만원, 수도료 3만원, 전기료 4만원)

나.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관리비의 월 평균액수 표시, 가목에 따른 비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 표시

(예시) 관리비 월평균 20만원 (일반관리비, 수도료, 전기료 포함)

※ 주택, 준주택 이외의 경우 미표시 가능

1 정액관리비 부과외의 경우 유형 3가지 (실비 일부 포함)

유형 1/3

정액으로 월 10만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
표시·광고 방법은?

(사례) 중개의뢰인이 직전 월 기준으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제공

(표출) 관리비 100,000원 (정액관리비, 직전 월 기준)

- 일반(공용)관리비 : 50,000원
- 수도료 : 20,000원
- 인터넷사용료 : 10,000원
- TV 사용료 : 10,000원
- 기타관리비 : 10,000원
- 전기료, 가스사용료, 난방비 (사용량에 따라 부과)

1 정액관리비 부과외의 경우 유형 3가지 (실비 일부 포함)

유형 2/3

10만원 이상 부과이나,
중개의뢰인 세부내역 미제시하는 경우
표시·광고 방법은?

(사례)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

(표출) 관리비 150,000원 (정액관리비)

-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비목별 금액 미표시
- 일반(공용)관리비, 수도료, 인터넷사용료, 기타관리비 포함
(전기료, 가스사용료, 난방비, TV사용료 미포함)

1 정액관리비 부과외의 경우 유형 3가지 (실비 일부 포함)

유형 3/3

정액으로 월 10만원 미만 부과되는 경우
표시·광고 방법은?

(사례) 직전 월 관리비 기준 관리비가 10만원 미만인 경우

(표출) 관리비 80,000원 (정액관리비, 직전 월 기준)

- 일반(공용)관리비, 전기료, 인터넷사용료, TV사용료, 기타관리비 포함 (수도료, 가스사용료, 난방비 미포함)

2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

유형 1/3 관리규약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
표시·광고 방법은?

<관리규약에 따라 부과>

(사례) 아파트·오피스텔 등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

(표출) 관리비 월평균 250,000원 (관리규약에 따라 부과, 최근 3개월 평균)

- 일반(공용)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, 난방비, TV사용료,
기타관리비 포함 (가스사용료, 인터넷사용료 미포함)

2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

유형 2/3

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 표시·광고 방법은?

<사용량 등에 따라 부과>

(사례) 소규모 오피스텔 등에서 부과되는 최근 3개월 또는 연평균 관리비

(표출) 관리비 월평균 200,000원 (최근 3개월 평균)

- ①~③ 부과방식을 참고하여 기재

① 공용관리비는 면적/세대별로 부과하고 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른 부과

② 전체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누어 부과

③ 세대별 사용량(별도 계량기)에 따라 부과

- 일반(공용)관리비, 전기료, 수도료, 난방비, TV사용료, 기타관리비 포함
(가스사용료, 인터넷사용료 미포함)

2 정액이 아닌 경우 유형 3가지

유형 3/3 중개의뢰인이 관리비를 미제시하는 경우
표시·광고 방법은?

<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제시>

(사례)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미제시로 전 세입자 확인내용,
인근 사례 등으로 추정한 관리비

(표출) 관리비 월평균 80,000원

- 단, 중개의뢰인이 관리비 세부내역 미제시로 전세입자등을 통해
확인한 추정 관리비 또는 인근 사례 등으로 추정한 관리비임 안내(표시)
- 일반(공용)관리비, TV사용료, 기타관리비등 포함

3 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

미등기건물, 신축건물 등
관리비 확인이 불가한 경우 표시·광고 방법은?

<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>

(사례) 신축건물 등으로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(표출) 관리비 : ①~③ 중 하나에 해당되어 **관리비 확인 불가**

-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
- ② 오피스텔 제외 상가건물에 해당하는 경우
- ③ 미등기건물, 신축건물 등 관리비 내역이 확인불가한 경우

부동산 허위매물 등 신고방법은?



"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" (budongsan24.kr)
 또는 "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" (budongsanwatch.kr)와
 관할 지자체(등록관청)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